

회원가입 신청서 (회사보관용)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사업자등록번호
CMS 자동 이체일		☒ 5일 ☐ 15일 ☐ 25일			
상 품	상품 250	☒ 10,000×250회 ☐	☒ 12,500×200회 ☐	☒ 14,710원×170회 (1인 1구좌) ☐	
	상품 390	☒ 15,600×250회 ☐	☒ 19,500×200회 ☐	☒ 22,940원×170회 (1인 1구좌) ☐	
계약일 : 20 년 월 일 () 구 좌					

전화번호 :

회원가입 신청서 (고객용)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사업자등록번호
CMS 자동 이체일		☒ 5일 ☐ 15일 ☐ 25일			
상 품	상품 250	☒ 10,000×250회 ☐ 12,500×200회 ☐ 14,710원×170회 (1인 1구좌) ☐			
	상품 390	☒ 15,600×250회 ☐ 19,500×200회 ☐ 22,940원×170회 (1인 1구좌) ☐			
계약일 : 20 년 월 일 () 구 좌					

전화번호 :

크루즈서비스 회원약관(회원가입 증서 고객용)

제 1 조 (목적)

이 계약은 (주)지우라이프상조(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금(이하 '회비'라 한다)을 납부하고, 회사는 약정된 크루즈 여행 서비스(이하 '여행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 2 조 (회원의 가입)

- 회사로부터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과 동시에 CMS 출금에 동의하고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회사는 회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크루즈 회원증서(이하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제 3 조 (단체회원의 가입)

-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 단체의 구성원 중 여행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 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

제 4 조 (철회권의 행사)

-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항의 회원 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사가 제7영업일 내에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10%의 지연이자(이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 5 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 의무)

-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회원은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하며,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증빙 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상품의 명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상품금액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횟수는 다음과 같다.

상품명	월납입금	납입횟수	상품금액	이용인원
상품 250	10,000원	250회	2,500,000원	1구좌 (1인)
	12,500원	200회		
	14,710원	170회		
상품 390	15,600원	250회	3,900,000원	1구좌 (1인)
	19,500원	200회		
	22,940원	170회		

제 6 조 (잔여 납입금의 납부)

회원이 월납부금액 완납이전에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여행신청과 동시에 소정의 신청금을 납부하고, 잔여금 입금에 회사가 지정한 일자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주소변경 통보의무)

-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 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 8 조 (여행서비스의 내용)

- 가입상품에 따른 여행서비스의 금액 및 내용은 회원증서에 표기된 상품의 구성 및 내용과 같다.
- 회사는 계약 체결 시 회원증서에 표기한 여행의 구성 및 내용을 가입 후 3년간 보장하며, 3년 이후에는 매년 새로운 구성 및 내용을 공지하고 상품금액을 인상 할 수 있다.

제 9 조 (여행서비스의 이용)

- 회원 및 회원이 지정하는 자는 여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있는자는 여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 여행서비스는 회사가 공지한 상품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1구좌당(1인) 1회에 한한다.
- 회원은 여행 신청시 선사의 계약서(크루즈약관)를 추가로 작성하고 계약에 동의해야 합니다.
- 여행계약서 작성 후 잔여납입금 납부는 제6조에 따른다.

제 10 조 (합승/승선 기준)

크루즈 선박의 탑승기준은 선사 및 여행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 탑승기준은, 선실은 2인 1실 기준이며, 기타 탑승/승선기준은 선사의 크루즈여행 약관에 따른다.

제 11 조 (여행 취소 및 배상)

- 회사는 최저 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선사 및 항공사의 일정에 의하여 여행계획을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고 변경된 일정을 재 공지 하여야 한다.
- 회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 등으로 여행일정의 변경 또는 취소 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목의 1회 금액을 회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 상품금액 여행요금의 20%
 -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 상품금액 여행요금의 50%
- 회원이 여행을 취소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는 위약금은 행사 접수 시 회사가 공지한 위약금 규정에 따르며, 회원은 여행서비스 신청 시 회사가 공지한 여행세부일정표, 크루즈 여행계약서 상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 3항의 위약금은 고객이 기납입한 월부금 또는 잔여납입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회원의 여행 취소시 회사는 4항의 위약금을 공제 후 제6조의 신청금 및 잔여납입금을 반환하여 회원이 월납입금을 계속 납부하고 여행서비스 신청 이전처럼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 5항의 반환을 원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에서 3항의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 12 조 (비용의 추가 부담)

회원은 다음 각목의 1의 경우 가입한 상품의 금액과 별도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가입 3년 이후에 제공되는 여행서비스의 인상된 금액
- 가입한 상품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여행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비용
- 상품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음료 및 주류 등 회원이 선택하여 받는 서비스, 선상탑 및 유류할증료, 성수기 할증료, 선내 유료프로그램(마용실,스파 등) 기타 선내 및 기항지 개인 지출비용 등
- 일정 추가비용, 환율부담금 (US\$ 기준 원화 1,200원 초과시 단계별 적용)

제 13 조 (단체계약의 여행서비스 이용)

제9조~제12조는 법인(단체)의 복수 인원이 여행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 14 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연 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5조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 회원이 여행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해약환급금표에 따른 해약 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해약환급율표 (%)
<별첨 참조>
-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7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연 1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본인 :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 대 리 인 : 회원증서, 위임장, 해약신청서

제 16 조 (변경 및 양도)

- 회원은 상품 및 회원지위를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거나 양도 할 수 있다.
-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에 대하여 10,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 회원은 계약금액 완납 후 크루즈 여행이 필요 없다고 판단시는 본 계약금액을 해지하고 상조의전 서비스 및 장례물품으로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여행 경비 불입 중 장례행사가 발생시 장례비용을 책정하고 행사 완료 후 차액분에 대하여 회원은 지우라이프 상조 회사에 지급하며 환불 금액이 발생시는 회사는 고객(회원 남매) 반환해 주는 것으로 한다.
※ 총 계약금액 완납 후 24개월경과 후 해지시는 불입금액 100% 환급한다.

제 17 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18 조 (시행)

이 약관은 2019. 8. 5 부터 시행한다.

(주)지우라이프상조 대표이사 조범식

